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용 호 부위원장

안녕하십니까? 김 용 호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8월 8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최근 정비구역 인접지 추가편입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범위를 10%에서 20%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.

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의 부지 정형화, 기반시설 확보, 유희지 활용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